

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(사립)단체 인준심사위원회 회칙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

본 위원회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(사립)단체 인준심사위원회(이하 '본 위원회')라고 칭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 위원회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(사립)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 제6조 3항에 의거,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고유한 특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면서도 교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평신도(사립)단체 인준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주교평의회에 보고함으로써, 교구장의 단체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단체인준에 관한 심의)

단체의 인준 승인에 대한 심의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- ① 단체의 목적, 조직 및 경과
- ② 단체의 회칙(정관)
- ③ 연간 활동계획 및 예산
- ④ 단체의 배속
- ⑤ 그 밖에 인준심사에 필요하여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

제4조 (단체인준의 취소에 관한 심의)

단체의 인준취소에 관한 심사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- ① 단체의 목적, 조직 및 경과
- ② 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
- ③ 담당신부의 의견
- ④ 그 밖에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

제2장 조 직

제5조 (구성)

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.

- ① (위원장) 위원장은 총대리 주교이다.
- ② (당연직 위원) 당연직 위원은 사무처장, 사목국장, 관리국장, 문화홍보국장, 사회사목부 사무국장이다.

- ③ (위촉위원) 위촉위원은 해당 단체의 상급 부서장과 담당신부이다.
- ④ (자문위원)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
- ⑤ (총무) 본 위원회의 총무는 사목국 단체사목부 담당신부가 맡는다.

제6조 (직무)

-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.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교구 사무처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총무는 단체의 인준 신청 및 심의 절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본 위원회의 실무를 주관한다.

제3장 회 의

제7조 (회의)

회의는 인준심사 의뢰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반기별로 개최한다.

제8조 (의결)

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/3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.

제9조 (소집)

회의는 위원장이 적어도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소집을 통보한다.

부 칙

제1조 본 회칙은 교구장의 승인을 받는 날(2009. 10. 26)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과 관례에 따른다.